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법률 제1039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법률 제1039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특례·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청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개되는 신상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제3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된 자의 신상정보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공개기간을 그 잔여 열람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